「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1장~제2장)」

[법률, 2016.11.7., 개정]

원문	번역문
第一章 总则	**제1장 총칙**
第一条 为了维护国家的主权和利益，加强海关监督管理，促进对外经济贸易和科技文化交往，保障社会主义现代化建设，特制定本法。	제1조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고 세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대외경제무역과 과학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海关是国家的进出关境（以下简称进出境）监督管理机关。海关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监管进出境的运输工具、货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국가의 국경출입(이하 '입출국') 감독관리기관이다. 세관은 이 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입출국하는 운수

物、行李物品、邮递物品和其他物品（以下简称进出境运输工具、货物、物品），征收关税和其他税、费，查缉走私，并编制海关统计和办理其他海关业务。	수단·화물·여행물품·우편물품과 그 밖의 물품(이하 '입출국 운수수단·화물·물품')을 감독관리하며 관세와 그 밖의 세금·비용을 징수하고 밀수를 수사하며 세관통계를 편성하고 그 밖의 세관업무를 처리한다.
第三条 国务院设立海关总署，统一管理全国海关。 国家在对外开放的口岸和海关监管业务集中的地点设立海关。海关的隶属关系，不受行政区划的限制。 海关依法独立行使职权，向海关总署负责。	제3조 국무원은 세관총서(海關總署)를 설립하여 전국의 세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는 대외에 개방한 항구와 세관감독관리업무가 집중된 지점에 세관을 설립한다. 세관의 예속관계는 행정구획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세관총서에 대해 책임진다.
第四条	제4조

国家在海关总署设立专门侦查走私犯罪的公安机构，配备专职缉私警察，负责对其管辖的走私犯罪案件的侦查、拘留、执行逮捕、预审。	국가가 세관총서에 설립한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공안기구는 전문적으로 밀매·밀수를 체포하는 경찰을 배치하여 관할하는 밀수범죄 안건의 수사·구류·체포집행·예심을 담당한다.
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履行侦查、拘留、执行逮捕、预审职责，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的规定办理。	세관의 밀수범죄를 수사하는 공안기구는 수사·구류·체포집행·예심의 직책을 이행하며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根据国家有关规定，可以设立分支机构。各分支机构办理其管辖的走私犯罪案件，应当依法向有管辖权的人民检察院移送起诉。	세관의 밀수범죄를 수사하는 공안기구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분점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각 분점기구는 그 기구가 관할하는 밀수범죄 안건을 처리하며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기소하여야 한다.
地方各级公安机关应当配合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依法	지방 각급 공안기관은 마땅히 세관의 밀수조사 공안기구가

履行职责。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第五条 国家实行联合缉私、统一处理、综合治理的缉私体制。海关负责组织、协调、管理查缉走私工作。有关规定由国务院另行制定。 各有关行政执法部门查获的走私案件，应当给予行政处罚的，移送海关依法处理；涉嫌犯罪的，应当移送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地方公安机关依据案件管辖分工和法定程序办理。	제5조 국가는 연합수사·통일관리·종합치안의 수사체제를 실시한다. 세관은 밀수수사업무의 조직·협조·관리를 담당한다. 관련 규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각 관련 행정집법부서가 추적한 밀수안건은 마땅히 행정처벌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의 밀수범죄조사공안기구·지방공안기구에 이송하여 안건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第六条 海关可以行使下列权力:	제6조 세관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一）检查进出境运输工具，查验进出境货物、物品；对违反本法或者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可以扣留。	수 있다. (1) 입출국 운수수단을 조사하고, 입출국화물·물품을 조사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압류 가능
（二）查阅进出境人员的证件；查问违反本法或者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嫌疑人，调查其违法行为。	(2) 입출국인원의 증빙문건을 열람한다.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한 용의자를 심문하고 위법행위 조사
（三）查阅、复制与进出境运输工具、货物、物品有关的合同、发票、帐册、单据、记录、文件、业务函电、录音录像制品和其他资料；对其中与违反本法或者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进出境运输工具、货物、物品有牵连的，可以扣留。	(3) 입출국 운수수단·화물·물품과 관련된 계약서·어음·장부·기록·문건·업무서신·녹음영상제품과 그 밖의 자료를 열람·복제한다. 그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한 입출국 운수수단·화물·물품과 연루되는 경우 압류 가능
（四）在海关监管区和海关附近沿海沿边规定地区，检查有走私嫌疑的运输工具和有藏匿走	(4) 세관감독관리구역과 세관부근 연해연변규정지역에서 밀수혐의가 있는 운수수단과

私货物、物品嫌疑的场所，检查走私嫌疑人的身体；对有走私嫌疑的运输工具、货物、物品和走私犯罪嫌疑人，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扣留；对走私犯罪嫌疑人，扣留时间不超过二十四小时，在特殊情况下可以延长至四十八小时。	밀수화물·물품의 은닉혐의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고 밀수용의자의 신체를 조사함. 밀수혐의가 있는 운수수단·화물·물품과 밀수범죄용의자에 대하여 직속 세관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관장의 비준을 거쳐 압류 가능. 밀수혐의용의자에 대한 압류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수한 상황 하에서 48시간까지 연장 가능.
在海关监管区和海关附近沿海沿边规定地区以外，海关在调查走私案件时，对有走私嫌疑的运输工具和除公民住处以外的有藏匿走私货物、物品嫌疑的场所，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进行检查，有关当事人应当到场；当事人未到场的，在有见证人在场的情况下，可以径行检查；对其中有证据证明	세관감독관리구역과 세관부근 연해연변규정지역을 제외하고 세관이 밀수안건을 조사할 시 밀수혐의가 있는 운수수단과 공민주거지 이외의 밀수혐의가 있는 화물·물품의 은닉장소에 대하여 직속 세관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관장의 비준을 거쳐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현장에 출석하여야 함. 당사자

有走私嫌疑的运输工具、货物、物品，可以扣留。	가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출석한 정황 하에서 직접 조사 가능. 그 중 밀수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운수수단·화물·물품에 대하여 압류 가능.
海关附近沿海沿边规定地区的范围，由海关总署和国务院公安部门会同有关省级人民政府确定。	세관부근 연해연변규정지역의 범위는 세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서가 관련 성급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확정함.
（五）在调查走私案件时，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查询案件涉嫌单位和涉嫌人员在金融机构、邮政企业的存款、汇款。	(5) 밀수안건을 조사할 시 직속 세관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관장의 비준을 거쳐 안건 혐의기관과 용의자의 금융기구·우편기업의 예금·송금을 조사 가능.
（六）进出境运输工具或者个人违抗海关监管逃逸的，海关可以连续追至海关监管区和海关附近沿海沿边规定地区以外，将其带回处理。	(6) 입출국 운수수단 또는 개인이 세관의 감독관리를 거역하고 도주한 경우 세관은 세관 감독관리구역과 세관부근 연해연변규정지역 이외에까지 연속 추적하여 용의자를 처리 가능.

（七）海关为履行职责，可以配备武器。海关工作人员佩带和使用武器的规则，由海关总署会同国务院公安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	(7) 세관은 직책의 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 세관 업무인원의 무기의 휴대와 사용에 관한 규칙은 세관총서가 국무원 공안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음.
（八）法律、行政法规规定由海关行使的其他权力。	(8)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세관이 행사하는 그 밖의 권력 행사 가능.
第七条 各地方、各部门应当支持海关依法行使职权，不得非法干预海关的执法活动。	제7조 각 지방, 각 부서는 세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하고 불법적으로 세관의 집행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八条 进出境运输工具、货物、物品，必须通过设立海关的地点进境或者出境。在特殊情况下，需要经过未设立海关的地	제8조 입출국 운수수단·화물·물품은 반드시 세관을 설립한 지점에서 수출하고 수입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세관

点临时进境或者出境的，必须经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机关批准，并依照本法规定办理海关手续。	이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에서 임시로 수출 또는 수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第九条 进出口货物，除另有规定的外，可以由进出口货物收发货人自行办理报关纳税手续，也可以由进出口货物收发货人委托海关准予注册登记的报关企业办理报关纳税手续。	제9조 수출입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이 스스로 납세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은 세관에 등록등기한 통관수속기업이 통관납세수속을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进出境物品的所有人可以自行办理报关纳税手续，也可以委托他人办理报关纳税手续。	입출국화물의 소유자는 스스로 통관납세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위탁하여 통관납세수속을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第十条 报关企业接受进出口货物收发货人的委托，以委托人的名义办理报关手续的，应当向海关提交由委托人签署的授权委托书，遵守本法对委托人的各项规定。 报关企业接受进出口货物收发货人的委托，以自己的名义办理报关手续的，应当承担与收发货人相同的法律责任。 委托人委托报关企业办理报关手续的，应当向报关企业提供所委托报关事项的真实情况；报关企业接受委托人的委托办理报关手续的，应当对委托人所提供情况的真实性进行合理审查。	제10조 통관수속기업이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이 위탁을 접수하여 위탁인의 명의로 통관수속을 하는 경우, 세관에 위탁인이 서명한 수권위탁서를 제출하고 이 법의 위탁인에 대한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관기업이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의 위탁을 접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통관수속을 하는 경우, 수하인과 적송인과 동일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탁인이 통관수속기업에 통관수속을 위탁하는 경우, 마땅히 통관기업에 위탁한 통관사항의 사실적 정황을 제공하여야하며 통관기업이 위탁인의 위탁을 접수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위탁인이

	제공한 정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十一条 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企业办理报关手续，必须依法经海关注册登记。未依法经海关注册登记，不得从事报关业务。 报关企业和报关人员不得非法代理他人报关，或者超出其业务范围进行报关活动。	제11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 통관기업의 통관수속 처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세관에 등록 및 등기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세관에 등록 및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통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관기업과 통관인원은 불법으로 타인의 통관수속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통관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十二条 海关依法执行职务，有关单位和个人应当如实回答询问，并予以配合，任何单位和个人不	제12조 세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진실되게 심문에 대답하여야

得阻挠。	하며 협조하여야 하고,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海关执行职务受到暴力抗拒时，执行有关任务的公安机关和人民武装警察部队应当予以协助。	세관의 직무 집행이 폭력적인 항거를 받은 경우, 관련 임무를 집행한 공안기관과 인민무장경찰부대는 협조하여야 한다.
第十三条	제13조
海关建立对违反本法规定逃避海关监管行为的举报制度。	세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제도를 수립한다.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对违反本法规定逃避海关监管的行为进行举报。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모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의 감독관리를 도피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가 있다.
海关对举报或者协助查获违反本法案件的有功单位和个人，应当给予精神的或者物质的奖励。	세관은 고발 또는 이 법을 위반한 안건의 수사에 협조한 공이 있는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

海关应当为举报人保密。	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세관은 고발인을 위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第二章 进出境运输工具	**제2장 입출국 운수수단**
第十四条	제14조
进出境运输工具到达或者驶离设立海关的地点时，运输工具负责人应当向海关如实申报，交验单证，并接受海关监管和检查。	입출국 운수수단이 세관이 설립된 지점에 도달하거나 세관이 설립된 지점으로부터 출발할 때, 운수수단 책임자는 세관에 진실되게 신고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인도하여 검수를 받고 세관의 감독관리와 조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停留在设立海关的地点的进出境运输工具，未经海关同意，不得擅自驶离。	세관이 설립된 지점에 정박하고 있는 입출국 운수수단은 세관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출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进出境运输工具从一个设立海关的地点驶往另一个设立海关的地点的，应当符合海关监管要求，办理海关手续，未办结	입출국 운수수단이 어느 세관 설립지점으로부터 다른 세관 설립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

海关手续的，不得改驶境外。	하여야 하며 통관수속을 처리하여야 하고 통관수속의 처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국경 밖으로 출발하여서는 아니된다.
第十五条 进境运输工具在进境以后向海关申报以前，出境运输工具在办结海关手续以后出境以前，应当按照交通主管机关规定的路线行进；交通主管机关没有规定的，由海关指定。	제15조 입국운수수단은 국경 안으로 진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출국운수수단은 통관수속의 처리를 종료한 후 출국하기 이전에 교통주관기관이 규정하는 노선에 따라 진입하여야 한다. 교통주관부서가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이 규정한다.
第十六条 进出境船舶、火车、航空器到达和驶离时间、停留地点、停留期间更换地点以及装卸货物、物品时间，运输工具负责人或者有关交通运输部门应当	제16조 입출국선박·기차·항공기의 도착과 출발시간·정박지점·정박시간 변경지점 및 화물의 선적과 하역, 물품시간은 운수수단 책임자 또는 관련 교통

事先通知海关。	운수부서가 마땅히 사전에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十七条 运输工具装卸进出境货物、物品或者上下进出境旅客，应当接受海关监管。	제17조 운수수단의 입출국화물의 선적과 하역, 물품 또는 입출국 승객의 승하차는 마땅히 세관의 감독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货物、物品装卸完毕，运输工具负责人应当向海关递交反映实际装卸情况的交接单据和记录。	화물·물품의 선적과 하역이 완료되면 운수수단 책임자는 마땅히 세관에 실제 선적과 하역 상황을 반영한 인수인계 증명서와 기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上下进出境运输工具的人员携带物品的，应当向海关如实申报，并接受海关检查。	입출국 운수수단에 승하차하는 인원이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에 진실되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의 조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第十八条 海关检查进出境运输工具时，	제18조 세관은 입출국 운수수단을 조

运输工具负责人应当到场，并根据海关的要求开启舱室、房间、车门；有走私嫌疑的，并应当开拆可能藏匿走私货物、物品的部位，搬移货物、物料。	사할 때, 운수수단 담당자는 현장에 출석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근거하여 객실·방·차문을 개방하여야 한다. 밀수 혐의가 있는 경우 마땅히 밀수화물·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개봉하여 화물·자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海关根据工作需要，可以派员随运输工具执行职务，运输工具负责人应当提供方便。	세관은 업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인원을 파견하여 운수수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운수수단의 담당자는 마땅히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十九条 进境的境外运输工具和出境的境内运输工具，未向海关办理手续并缴纳关税，不得转让或者移作他用。	제19조 입국하는 국경 외 운수수단과 출국하는 국경 내 운수수단이 세관에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양도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二十条 进出境船舶和航空器兼营境内客、货运输，应当符合海关监管要求。 进出境运输工具改营境内运输，需向海关办理手续。	제20조 입출국하는 선박과 항공기가 국경 내의 승객·화물의 운수를 겸영하는 경우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입출국 운수수단이 국경 내의 운수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 세관에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条 沿海运输船舶、渔船和从事海上作业的特种船舶，未经海关同意，不得载运或者换取、买卖、转让进出境货物、物品。	제21조 연해운수선박·어선과 해상작업에 종사하는 특수한 종류의 선박은 세관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출국 화물·물품을 선적·교체·매매·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二十二条 进出境船舶和航空器，由于不可抗力的原因，被迫在未设立	제22조 입출국선박과 항공기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하여 세관

海关的地点停泊、降落或者抛掷、起卸货物、物品，运输工具负责人应当立即报告附近海关。	이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에 정박·하강하거나 또는 화물·물품을 선적·하역·방치하는 경우, 운수수단의 담당자는 즉시 근처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